

거제역 양우내안에 아시어드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2.14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00-595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 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2.14.(금)	2025.02.24.(월)	2025.02.25.(화)	2025.02.26.(수)	2025.03.05.(수)	25.03.10.(월)~ 25.03.14.(금)	25.03.17.(월)~ 25.03.19.(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거제역양우내안애아시아드.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2.1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2024.0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2.24.(월)	2025.02.25.(화)	2025.02.26.(수)	2025.03.05.(수)	25.03.10.(월)~ 25.03.14.(금)	25.03.17.(월)~ 25.03.19.(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계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계약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76, 삼성그린코아 오피스텔 201동 208호) 	
<p>※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계약처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p> <p>※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p> <p>※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p> <p>-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p> <p>■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p> <p>■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p>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과 - 6303호(2025.02.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39-1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3층 2개동 총 168세대
[특별공급 86세대(기관추천 17세대, 다자녀가구 17세대, 신혼부부 31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05	01	067.9516	67	67.9516	22.2150	90.1666	32.7950	122.9616	16.3631	21	2	2	5	0	2	11	10	1
	02	073.9840	73	73.9840	25.3167	99.3007	36.1173	135.4180	17.8157	42	4	4	6	0	4	18	24	2
	03	075.7258	75	75.7258	25.7310	101.4568	36.9015	138.3583	18.2351	21	2	2	4	1	2	11	10	1
	04	080.9023	80	80.9023	27.1207	108.0230	39.2897	147.3127	19.4816	21	2	2	4	1	2	11	10	1
	05	084.9116A	84A	84.9116	28.5826	113.4942	41.2797	154.7739	20.4471	21	2	2	4	1	2	11	10	1
	06	084.9571B	84B	84.9571	26.7065	111.6636	40.6139	152.2775	20.4581	21	2	2	4	1	2	11	10	1
	07	084.6129C	84C	84.6129	27.2469	111.8598	40.6852	152.5450	20.3752	21	3	3	4	1	2	13	8	1
합 계										168	17	17	31	5	16	86	82	8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67.9516	073.9840	075.7258	080.9023	084.9116A	084.9571B	084.6129C
약식표기	67	73	75	80	84A	84B	84C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므로,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 수	동호 구분	총 구분	해당 세대 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5.07.25	2025.10.24	2026.01.23	2026.04.24	2026.06.25	2026.08.25			
67.9516	21	102 동 1호	3	1	240,423,892	348,876,108	589,300,000	10,000,000	4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176,790,000	
			4	1	240,423,892	355,176,108	595,600,000	10,000,000	49,560,000	59,560,000	59,560,000	59,560,000	59,560,000	59,560,000	59,560,000	59,560,000	59,560,000	178,680,000
			5	1	240,423,892	361,476,108	601,900,000	10,000,000	5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180,570,000
			6	1	240,423,892	367,676,108	608,100,000	10,000,000	50,810,000	60,810,000	60,810,000	60,810,000	60,810,000	60,810,000	60,810,000	60,810,000	60,810,000	182,430,000
			7	1	240,423,892	373,976,108	614,400,000	10,000,000	51,440,000	61,440,000	61,440,000	61,440,000	61,440,000	61,440,000	61,440,000	61,440,000	61,440,000	184,320,000
			8	1	240,423,892	380,276,108	620,700,000	10,000,000	5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186,210,000
			9	1	240,423,892	383,376,108	623,800,000	10,000,000	52,380,000	62,380,000	62,380,000	62,380,000	62,380,000	62,380,000	62,380,000	62,380,000	62,380,000	187,140,000
			10	1	240,423,892	386,476,108	626,900,000	10,000,000	5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188,070,000
			11	1	240,423,892	388,676,108	629,100,000	10,000,000	52,910,000	62,910,000	62,910,000	62,910,000	62,910,000	62,910,000	62,910,000	62,910,000	62,910,000	188,730,000
			12	1	240,423,892	390,876,108	631,300,000	10,000,000	53,130,000	63,130,000	63,130,000	63,130,000	63,130,000	63,130,000	63,130,000	63,130,000	63,130,000	189,390,000
			13	1	240,423,892	393,076,108	633,500,000	10,000,000	5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190,050,000
			14	1	240,423,892	395,276,108	635,700,000	10,000,000	53,570,000	63,570,000	63,570,000	63,570,000	63,570,000	63,570,000	63,570,000	63,570,000	63,570,000	190,710,000
			15	1	240,423,892	397,476,108	637,900,000	10,000,000	53,790,000	63,790,000	63,790,000	63,790,000	63,790,000	63,790,000	63,790,000	63,790,000	63,790,000	191,370,000
			16	1	240,423,892	399,676,108	640,100,000	10,000,000	54,010,000	64,010,000	64,010,000	64,010,000	64,010,000	64,010,000	64,010,000	64,010,000	64,010,000	192,030,000
			17	1	240,423,892	401,876,108	642,300,000	10,000,000	5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192,690,000

			18	1	240,423,892	404,076,108	644,500,000	10,000,000	5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193,350,000
			19	1	240,423,892	406,276,108	646,700,000	10,000,000	54,670,000	64,670,000	64,670,000	64,670,000	64,670,000	64,670,000	64,670,000	194,010,000
			20	1	240,423,892	408,476,108	648,900,000	10,000,000	5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194,670,000
			21	1	240,423,892	410,676,108	651,100,000	10,000,000	5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195,330,000
			22	1	240,423,892	412,876,108	653,300,000	10,000,000	55,330,000	65,330,000	65,330,000	65,330,000	65,330,000	65,330,000	65,330,000	195,990,000
			23	1	240,423,892	414,976,108	655,400,000	10,000,000	5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196,620,000
			3	1	261,767,511	380,532,489	642,300,000	10,000,000	5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192,690,000
			4	1	261,767,511	387,332,489	649,100,000	10,000,000	54,910,000	64,910,000	64,910,000	64,910,000	64,910,000	64,910,000	64,910,000	194,730,000
			5	1	261,767,511	394,232,489	656,000,000	10,000,000	5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196,800,000
			6	1	261,767,511	401,032,489	662,800,000	10,000,000	56,280,000	66,280,000	66,280,000	66,280,000	66,280,000	66,280,000	66,280,000	198,840,000
			7	1	261,767,511	407,832,489	669,600,000	10,000,000	56,960,000	66,960,000	66,960,000	66,960,000	66,960,000	66,960,000	66,960,000	200,880,000
			8	1	261,767,511	414,732,489	676,500,000	10,000,000	57,650,000	67,650,000	67,650,000	67,650,000	67,650,000	67,650,000	67,650,000	202,950,000
			9	1	261,767,511	418,132,489	679,900,000	10,000,000	5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203,970,000
			10	1	261,767,511	421,532,489	683,300,000	10,000,000	5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204,990,000
			11	1	261,767,511	423,932,489	685,700,000	10,000,000	5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205,710,000
			12	1	261,767,511	426,332,489	688,100,000	10,000,000	58,810,000	68,810,000	68,810,000	68,810,000	68,810,000	68,810,000	68,810,000	206,430,000
			13	1	261,767,511	428,732,489	690,500,000	10,000,000	59,050,000	69,050,000	69,050,000	69,050,000	69,050,000	69,050,000	69,050,000	207,150,000
			14	1	261,767,511	431,032,489	692,800,000	10,000,000	59,280,000	69,280,000	69,280,000	69,280,000	69,280,000	69,280,000	69,280,000	207,840,000
			15	1	261,767,511	433,432,489	695,200,000	10,000,000	59,520,000	69,520,000	69,520,000	69,520,000	69,520,000	69,520,000	69,520,000	208,560,000
			16	1	261,767,511	435,832,489	697,600,000	10,000,000	5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209,280,000
			17	1	261,767,511	438,232,489	700,000,000	10,000,000	6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10,000,000
			18	1	261,767,511	440,632,489	702,400,000	10,000,000	60,240,000	70,240,000	70,240,000	70,240,000	70,240,000	70,240,000	70,240,000	210,720,000
			19	1	261,767,511	443,032,489	704,800,000	10,000,000	60,480,000	70,480,000	70,480,000	70,480,000	70,480,000	70,480,000	70,480,000	211,440,000
			20	1	261,767,511	445,432,489	707,200,000	10,000,000	60,720,000	70,720,000	70,720,000	70,720,000	70,720,000	70,720,000	70,720,000	212,160,000
			21	1	261,767,511	447,832,489	709,600,000	10,000,000	60,960,000	70,960,000	70,960,000	70,960,000	70,960,000	70,960,000	70,960,000	212,880,000
			22	1	261,767,511	450,232,489	712,000,000	10,000,000	6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213,600,000
			23	1	261,767,511	452,632,489	714,400,000	10,000,000	61,440,000	71,440,000	71,440,000	71,440,000	71,440,000	71,440,000	71,440,000	214,320,000
73.9840	42		3	1	261,767,511	367,632,489	629,400,000	10,000,000	5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188,820,000
			4	1	261,767,511	374,332,489	636,100,000	10,000,000	53,610,000	63,610,000	63,610,000	63,610,000	63,610,000	63,610,000	63,610,000	190,830,000
			5	1	261,767,511	381,032,489	642,800,000	10,000,000	5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192,840,000
			6	1	261,767,511	387,732,489	649,500,000	10,000,000	54,950,000	64,950,000	64,950,000	64,950,000	64,950,000	64,950,000	64,950,000	194,850,000
			7	1	261,767,511	394,432,489	656,200,000	10,000,000	55,620,000	65,620,000	65,620,000	65,620,000	65,620,000	65,620,000	65,620,000	196,860,000
			8	1	261,767,511	401,132,489	662,900,000	10,000,000	56,290,000	66,290,000	66,290,000	66,290,000	66,290,000	66,290,000	66,290,000	198,870,000
			9	1	261,767,511	404,532,489	666,300,000	10,000,000	56,630,000	66,630,000	66,630,000	66,630,000	66,630,000	66,630,000	66,630,000	199,890,000
			10	1	261,767,511	407,832,489	669,600,000	10,000,000	56,960,000	66,960,000	66,960,000	66,960,000	66,960,000	66,960,000	66,960,000	200,880,000
			11	1	261,767,511	410,232,489	672,000,000	10,000,000	5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01,600,000
			12	1	261,767,511	412,532,489	674,300,000	10,000,000	57,430,000	67,430,000	67,430,000	67,430,000	67,430,000	67,430,000	67,430,000	202,290,000
			13	1	261,767,511	414,832,489	676,600,000	10,000,000	57,660,000	67,660,000	67,660,000	67,660,000	67,660,000	67,660,000	67,660,000	202,980,000
			14	1	261,767,511	417,232,489	679,000,000	10,000,000	5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15	1	261,767,511	419,532,489	681,300,000	10,000,000	58,130,000	68,130,000	68,130,000	68,130,000	68,130,000	68,130,000	68,130,000	204,390,000
			16	1	261,767,511	421,932,489	683,700,000	10,000,000	5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205,110,000
			17	1	261,767,511	424,232,489	686,000,000	10,000,000	5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05,800,000
			18	1	261,767,511	426,632,489	688,400,000	10,000,000	58,840,000	68,840,000	68,840,000	68,840,000	68,840,000	68,840,000	68,840,000	206,520,000
			19	1	261,767,511	428,932,489	690,700,000	10,000,000	59,070,000	69,070,000	69,070,000	69,070,000	69,070,000	69,070,000	69,070,000	207,210,000
			20	1	261,767,511	431,332,489	693,100,000	10,000,000	59,310,000	69,310,000	69,310,000	69,310,000	69,310,000	69,310,000	69,310,000	207,930,000
			21	1	261,767,511	433,632,489	695,400,000	10,000,000	5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208,620,000
			22	1	261,767,511	435,932,489	697,700,000	10,000,000	59,770,000	69,770,000	69,770,000	69,770,000	69,770,000	69,770,000	69,770,000	209,310,000
			23	1	261,767,511	438,332,489	700,100,000	10,000,000	60,010,000	70,010,000	70,010,000	70,010,000	70,010,000	70,010,000	70,010,000	210,030,000
75.7258	21		3	1	267,930,285	425,569,715	693,500,000	10,000,000	59,350,000	69,350,000	69,350,000	69,350,000	69,350,000	69,350,000	69,350,000	208,050,000
			4	1	267,930,285	432,869,715	700,800,000	10,000,000	6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210,240,000
			5	1	267,930,285	440,269,715	708,200,000	10,000,000	60,820,000	70,820,000	70,820,000	70,820,000	70,820,000	70,820,000	70,820,000	212,460,000
			6	1	267,930,285	447,669,715	715,600,000	10,000,000	61,560,000	71,560,000	71,560,000	71,560,000	71,560,000	71,560,000	71,560,000	214,680,000
			7	1	267,930,285	455,069,715	723,000,000	10,000,000	6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216,900,000
			8	1	267,930,285	462,369,715	730,300,000	10,000,000	63,030,000	73,030,000	73,030,000	73,030,000	73,030,000	73,030,000	73,030,000	219,090,000

			9	1	267,930,285	466,069,715	734,000,000	10,000,000	6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220,200,000
			10	1	267,930,285	469,769,715	737,700,000	10,000,000	63,770,000	73,770,000	73,770,000	73,770,000	73,770,000	73,770,000	73,770,000	221,310,000
			11	1	267,930,285	472,369,715	740,300,000	10,000,000	64,030,000	74,030,000	74,030,000	74,030,000	74,030,000	74,030,000	74,030,000	222,090,000
			12	1	267,930,285	474,969,715	742,900,000	10,000,000	6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222,870,000
			13	1	267,930,285	477,569,715	745,500,000	10,000,000	64,550,000	74,550,000	74,550,000	74,550,000	74,550,000	74,550,000	74,550,000	223,650,000
			14	1	267,930,285	480,069,715	748,000,000	10,000,000	6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224,400,000
			15	1	267,930,285	482,669,715	750,600,000	10,000,000	65,060,000	75,060,000	75,060,000	75,060,000	75,060,000	75,060,000	75,060,000	225,180,000
			16	1	267,930,285	485,269,715	753,200,000	10,000,000	65,320,000	75,320,000	75,320,000	75,320,000	75,320,000	75,320,000	75,320,000	225,960,000
			17	1	267,930,285	487,869,715	755,800,000	10,000,000	65,580,000	75,580,000	75,580,000	75,580,000	75,580,000	75,580,000	75,580,000	226,740,000
			18	1	267,930,285	490,469,715	758,400,000	10,000,000	65,840,000	75,840,000	75,840,000	75,840,000	75,840,000	75,840,000	75,840,000	227,520,000
			19	1	267,930,285	493,069,715	761,000,000	10,000,000	6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20	1	267,930,285	495,569,715	763,500,000	10,000,000	6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229,050,000
			21	1	267,930,285	498,169,715	766,100,000	10,000,000	6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229,830,000
			22	1	267,930,285	500,769,715	768,700,000	10,000,000	66,870,000	76,870,000	76,870,000	76,870,000	76,870,000	76,870,000	76,870,000	230,610,000
			23	1	267,930,285	503,369,715	771,300,000	10,000,000	6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231,390,000
84.9023	21	101 층 2호	3	1	286,245,590	430,554,410	716,800,000	10,000,000	6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215,040,000
			4	1	286,245,590	438,154,410	724,400,000	10,000,000	62,440,000	72,440,000	72,440,000	72,440,000	72,440,000	72,440,000	72,440,000	217,320,000
			5	1	286,245,590	445,754,410	732,000,000	10,000,000	6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219,600,000
			6	1	286,245,590	453,354,410	739,600,000	10,000,000	6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221,880,000
			7	1	286,245,590	461,054,410	747,300,000	10,000,000	64,730,000	74,730,000	74,730,000	74,730,000	74,730,000	74,730,000	74,730,000	224,190,000
			8	1	286,245,590	468,654,410	754,900,000	10,000,000	6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226,470,000
			9	1	286,245,590	472,454,410	758,700,000	10,000,000	65,870,000	75,870,000	75,870,000	75,870,000	75,870,000	75,870,000	75,870,000	227,610,000
			10	1	286,245,590	476,254,410	762,500,000	10,000,000	6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228,750,000
			11	1	286,245,590	478,954,410	765,200,000	10,000,000	6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229,560,000
			12	1	286,245,590	481,554,410	767,800,000	10,000,000	66,780,000	76,780,000	76,780,000	76,780,000	76,780,000	76,780,000	76,780,000	230,340,000
			13	1	286,245,590	484,254,410	770,500,000	10,000,000	67,050,000	77,050,000	77,050,000	77,050,000	77,050,000	77,050,000	77,050,000	231,150,000
			14	1	286,245,590	486,954,410	773,200,000	10,000,000	6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231,960,000
			15	1	286,245,590	489,654,410	775,900,000	10,000,000	67,590,000	77,590,000	77,590,000	77,590,000	77,590,000	77,590,000	77,590,000	232,770,000
			16	1	286,245,590	492,254,410	778,500,000	10,000,000	67,850,000	77,850,000	77,850,000	77,850,000	77,850,000	77,850,000	77,850,000	233,550,000
			17	1	286,245,590	494,954,410	781,200,000	10,000,000	6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234,360,000
			18	1	286,245,590	497,654,410	783,900,000	10,000,000	6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235,170,000
			19	1	286,245,590	500,254,410	786,500,000	10,000,000	6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235,950,000
			20	1	286,245,590	502,954,410	789,200,000	10,000,000	68,920,000	78,920,000	78,920,000	78,920,000	78,920,000	78,920,000	78,920,000	236,760,000
			21	1	286,245,590	505,654,410	791,900,000	10,000,000	69,190,000	79,190,000	79,190,000	79,190,000	79,190,000	79,190,000	79,190,000	237,570,000
			22	1	286,245,590	508,254,410	794,500,000	10,000,000	69,450,000	79,450,000	79,450,000	79,450,000	79,450,000	79,450,000	79,450,000	238,350,000
			23	1	286,245,590	510,954,410	797,200,000	10,000,000	69,720,000	79,720,000	79,720,000	79,720,000	79,720,000	79,720,000	79,720,000	239,160,000
84.9116 A	21	102 층 2호	3	1	300,431,150	422,968,850	723,400,000	10,000,000	62,340,000	72,340,000	72,340,000	72,340,000	72,340,000	72,340,000	72,340,000	217,020,000
			4	1	300,431,150	430,668,850	731,100,000	10,000,000	63,110,000	73,110,000	73,110,000	73,110,000	73,110,000	73,110,000	73,110,000	219,330,000
			5	1	300,431,150	438,368,850	738,800,000	10,000,000	63,880,000	73,880,000	73,880,000	73,880,000	73,880,000	73,880,000	73,880,000	221,640,000
			6	1	300,431,150	446,068,850	746,500,000	10,000,000	64,650,000	74,650,000	74,650,000	74,650,000	74,650,000	74,650,000	74,650,000	223,950,000
			7	1	300,431,150	453,768,850	754,200,000	10,000,000	6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226,260,000
			8	1	300,431,150	461,468,850	761,900,000	10,000,000	66,190,000	76,190,000	76,190,000	76,190,000	76,190,000	76,190,000	76,190,000	228,570,000
			9	1	300,431,150	465,268,850	765,700,000	10,000,000	66,570,000	76,570,000	76,570,000	76,570,000	76,570,000	76,570,000	76,570,000	229,710,000
			10	1	300,431,150	469,168,850	769,600,000	10,000,000	66,960,000	76,960,000	76,960,000	76,960,000	76,960,000	76,960,000	76,960,000	230,880,000
			11	1	300,431,150	471,868,850	772,300,000	10,000,000	67,230,000	77,230,000	77,230,000	77,230,000	77,230,000	77,230,000	77,230,000	231,690,000
			12	1	300,431,150	474,468,850	774,900,000	10,000,000	6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232,470,000
			13	1	300,431,150	477,168,850	777,600,000	10,000,000	67,760,000	77,760,000	77,760,000	77,760,000	77,760,000	77,760,000	77,760,000	233,280,000
			14	1	300,431,150	479,868,850	780,300,000	10,000,000	68,030,000	78,030,000	78,030,000	78,030,000	78,030,000	78,030,000	78,030,000	234,090,000
			15	1	300,431,150	482,568,850	783,000,000	10,000,000	6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234,900,000
			16	1	300,431,150	485,268,850	785,700,000	10,000,000	6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235,710,000
			17	1	300,431,150	487,968,850	788,400,000	10,000,000	68,840,000	78,840,000	78,840,000	78,840,000	78,840,000	78,840,000	78,840,000	236,520,000
			18	1	300,431,150	490,668,850	791,100,000	10,000,000	69,110,000	79,110,000	79,110,000	79,110,000	79,110,000	79,110,000	79,110,000	237,330,000
			19	1	300,431,150	493,368,850	793,800,000	10,000,000	69,380,000	79,380,000	79,380,000	79,380,000	79,380,000	79,380,000	79,380,000	238,140,000
			20	1	300,431,150	496,068,850	796,500,000	10,000,000	69,650,000	79,650,000	79,650,000	79,650,000	79,650,000	79,650,000	79,650,000	238,950,000

84.9571 B	21	102 동 3호	21	1	300,431,150	498,768,850	799,200,000	10,000,000	69,920,000	79,920,000	79,920,000	79,920,000	79,920,000	79,920,000	79,920,000	239,760,000						
			22	1	300,431,150	501,468,850	801,900,000	10,000,000	70,190,000	80,190,000	80,190,000	80,190,000	80,190,000	80,190,000	80,190,000	80,190,000	80,190,000	240,570,000				
			23	1	300,431,150	504,168,850	804,600,000	10,000,000	70,460,000	80,460,000	80,460,000	80,460,000	80,460,000	80,460,000	80,460,000	80,460,000	80,460,000	80,460,000	241,380,000			
			84.6129 C	21	101 동 3호	3	1	299,374,301	442,925,699	742,300,000	10,000,000	6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222,690,000		
						4	1	299,374,301	450,825,699	750,200,000	10,000,000	65,020,000	75,020,000	75,020,000	75,020,000	75,020,000	75,020,000	75,020,000	75,020,000	75,020,000	225,060,000	
						5	1	299,374,301	458,725,699	758,100,000	10,000,000	65,810,000	75,810,000	75,810,000	75,810,000	75,810,000	75,810,000	75,810,000	75,810,000	75,810,000	75,810,000	227,430,000
						6	1	299,374,301	466,625,699	766,000,000	10,000,000	6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229,800,000
						7	1	299,374,301	474,525,699	773,900,000	10,000,000	67,390,000	77,390,000	77,390,000	77,390,000	77,390,000	77,390,000	77,390,000	77,390,000	77,390,000	77,390,000	232,170,000
						8	1	299,374,301	482,425,699	781,800,000	10,000,000	68,18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234,540,000
						9	1	299,374,301	486,325,699	785,700,000	10,000,000	6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78,570,000	235,710,000
						10	1	299,374,301	490,325,699	789,700,000	10,000,000	68,970,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236,910,000
						11	1	299,374,301	493,025,699	792,400,000	10,000,000	69,240,000	79,240,000	79,240,000	79,240,000	79,240,000	79,240,000	79,240,000	79,240,000	79,240,000	79,240,000	237,720,000
						12	1	299,374,301	495,825,699	795,200,000	10,000,000	69,520,000	79,520,000	79,520,000	79,520,000	79,520,000	79,520,000	79,520,000	79,520,000	79,520,000	79,520,000	238,560,000
						13	1	299,374,301	498,625,699	798,000,000	10,000,000	6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239,400,000
						14	1	299,374,301	501,325,699	800,700,000	10,000,000	70,070,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240,210,000
						15	1	299,374,301	504,125,699	803,500,000	10,000,000	70,350,000	80,350,000	80,350,000	80,350,000	80,350,000	80,350,000	80,350,000	80,350,000	80,350,000	80,350,000	241,050,000
						16	1	299,374,301	506,925,699	806,300,000	10,000,000	70,630,000	80,630,000	80,630,000	80,630,000	80,630,000	80,630,000	80,630,000	80,630,000	80,630,000	80,630,000	241,890,000
						17	1	299,374,301	509,625,699	809,000,000	10,000,000	7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242,700,000
						18	1	299,374,301	512,425,699	811,800,000	10,000,000	71,180,000	81,180,000	81,180,000	81,180,000	81,180,000	81,180,000	81,180,000	81,180,000	81,180,000	81,180,000	243,540,000
						19	1	299,374,301	515,125,699	814,500,000	10,000,000	71,450,000	81,450,000	81,450,000	81,450,000	81,450,000	81,450,000	81,450,000	81,450,000	81,450,000	81,450,000	244,350,000
						20	1	299,374,301	517,925,699	817,300,000	10,000,000	7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245,190,000
						21	1	299,374,301	520,725,699	820,100,000	10,000,000	72,010,000	82,010,000	82,010,000	82,010,000	82,010,000	82,010,000	82,010,000	82,010,000	82,010,000	82,010,000	246,030,000
						22	1	299,374,301	523,425,699	822,800,000	10,000,000	72,280,000	82,280,000	82,280,000	82,280,000	82,280,000	82,280,000	82,280,000	82,280,000	82,280,000	82,280,000	246,840,000
23	1	299,374,301				526,225,699	825,600,000	10,000,000	72,56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247,68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인지세의 경우 사업주체 및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납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²)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m²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이자 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됨.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중도금이자 후불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67	73	75	80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1	1	1	1	7
	장애인	1	2	1	1	1	1	1	8
	중소기업 근로자	0	1	0	0	0	0	1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4	2	2	2	2	3	17
신혼부부 특별공급		5	6	4	4	4	4	4	3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0	1	1	1	1	1	5
생애최초 특별공급		2	4	2	2	2	2	2	16
합 계		11	18	11	11	11	11	13	8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배점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배점</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배점기준</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r> <th></th> <th></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3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대구성(3)</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3세대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부모 가족</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 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3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2.14.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비고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청약신청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35%)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2.14.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예외사항

-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30%;">가점제</th> <th style="width: 30%;">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규제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규제지역</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		40%	6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p>-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p> <p>-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2.2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계약처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거제역 양우내안에 아시아드 사업주체 계약처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76,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201동 208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일반공급	1순위	2025.02.25.(화) 09:00~17:30		
	2순위	2025.02.26.(수) 09:00~17:30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2순위)	2025.03.0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주체 계약처 또는 은행창구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계약처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p>공고단지 청약연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3.05.(수) ~ 2025.03.14(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3.05.(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 분		자격확인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025.03.10.(월) ~ 2025.03.14.(금) 10: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계약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76, 삼성그린코아 오피스텔 201동 208호 (☎1600-5955)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전원		
	일반공급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이전, 아래를 참고하시어 부적격 여부 및 해당 사항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당첨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사업주체 계약처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동 ·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는 본인의 당첨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간 내 해당 미비점을 보완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부적격 또는 당첨포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해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4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간,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서류접수 기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계약처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서류접수 기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사업주체 계약처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 18세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계약처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관한 규칙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직계비속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사업주체 계약처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계약처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사업주체 계약처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계약처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당첨자(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시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발급기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계약처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서류접수 기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서류접수 기간 제출,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주체 계약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

서류 구분	해당자격	납부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 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①, ② 세무서 ③, ④ 해당직장, 세무서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공통 (필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①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② 행정복지센터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추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토지를 소유한 경우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집합건물 : ①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 분	서류유형		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계약처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서류접수 기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 부임 인정 불가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3.17(월) ~ 2025.03.19(수) 10:00~17:00	사업주체 계약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76, 삼성그린코아 오피스텔 201동 208호)	1600-5955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청약 시 경쟁이 발생한 타입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경쟁 미달 타입은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 계약처를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당첨제

한 등)이 발생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사업주체 계약처를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인정(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홈페이지 서식 참조(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적격여부 확인 증빙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공급계약체결 위임용(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계약처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14.)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45666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사업주체 계약처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사업주체 계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 계약처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계약체결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및 제3항 및 제26조의 2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공급계약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계약처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단, 천재지변,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제외)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등·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금융권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계약처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시행수탁사의 계좌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불과함)
 - 본 주택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개인

-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 및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가 우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사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사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시행위탁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가 우선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인지세제외)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인지세는 계약자와 시행수탁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단, 유상옵션계약의 당사자에서 시행수탁사는 제외되고, 시행수탁사에게 유상옵션 관련 일체의 사항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미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계약하여야 하며, 공급금액 외 발코니확장비용을 납부하셔야 함을 필히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품목의 납부 방법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67	33,000,000	3,300,000	29,700,000	
73	35,200,000	3,520,000	31,680,000	
75	35,200,000	3,520,000	31,680,000	
80	38,500,000	3,850,000	34,650,000	
84A	38,500,000	3,850,000	34,650,000	
84B	38,500,000	3,850,000	34,650,000	
84C	38,500,000	3,850,000	34,65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비용(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456698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사업주체 계약처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예시 : 101동 701호 계약자 → '101701홍길동' / 102동 1803호 계약자 → '1021803홍길동')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새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 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희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은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등 부가계약 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개별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위치	기본형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67타입	중문	현관	미설치	LX하우시스 3연동 자동	2,970,000	297,000	2,673,000
	바닥타일	거실, 주방, 복도, 펜트리	강마루 시공	포세린 타일	1,650,000	165,000	1,485,000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아트월	포세린 또는 폴리싱타일(600*1200)	세라믹 타일	2,970,000	297,000	2,673,000
	주방상부장+상판+벽특화	주방	주방벽체 - 타일, 주방상판 - MMA, 싱크볼 - 굴곡형(850), PET 도어마감, 일반 침니형 후드	주방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볼 - 각형볼, 아일랜드매입콘센트, 상부장 유리 도어마감 및 조명, 고급형 시크릿 후드	6,600,000	660,000	5,940,000
	주방 우물천정	주방 천정	식탁 매입등	우물천정+포인트판넬+천정 직부등	814,000	81,400	732,600
	거실 우물천정	거실 천정	우물천정+직부등	우물천정+라인등	649,000	64,900	584,100
73타입	냉장고장+측면장식장	주방	일반 + 김치냉장고장	1도어 냉장고장(냉장, 냉동, 김치)+측면장식장	990,000	99,000	891,000
	중문	현관	미설치	LX하우시스 3연동 자동	2,970,000	297,000	2,673,000
	바닥타일	거실, 주방, 복도, 펜트리	강마루 시공	포세린 타일	1,760,000	176,000	1,584,000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아트월	포세린 또는 폴리싱타일(600*1200)	세라믹 타일	2,970,000	297,000	2,673,000
	주방상부장+상판+벽특화	주방	주방벽체 - 타일, 주방상판 - MMA, 싱크볼 - 굴곡형(850), PET 도어마감, 일반 침니형 후드	주방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볼 - 각형볼, 아일랜드매입콘센트, 상부장 유리 도어마감 및 조명, 고급형 시크릿 후드	5,830,000	583,000	5,247,000
	주방 우물천정	주방 천정	식탁 매입등	우물천정+포인트판넬+천정 직부등	847,000	84,700	762,300
75타입	거실 우물천정	거실 천정	우물천정+직부등	우물천정+라인등	638,000	63,800	574,200
	냉장고장+측면장식장	주방	일반 + 김치냉장고장	1도어 냉장고장(냉장, 냉동, 김치)+측면장식장	1,100,000	110,000	990,000
	중문	현관	미설치	LX하우시스 여닫이 도어	1,980,000	198,000	1,782,000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펜트리	강마루 시공	포세린 타일	1,540,000	154,000	1,386,000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아트월	포세린 또는 폴리싱타일(600*1200)	세라믹 타일	2,970,000	297,000	2,673,000
	주방상부장+상판+벽특화	주방	주방벽체 - 타일, 주방상판 - MMA, 싱크볼 - 굴곡형(850), PET 도어마감, 일반 침니형 후드	주방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볼 - 각형볼, 아일랜드매입콘센트, 상부장 유리 도어마감 및 조명, 고급형 시크릿 후드	6,050,000	605,000	5,445,000
	주방 우물천정	주방 천정	식탁 매입등	우물천정+포인트판넬+천정 직부등	726,000	72,600	653,400
	거실 우물천정	거실 천정	우물천정+직부등	우물천정+라인등	462,000	46,200	415,800
	냉장고장+측면장식장	주방	일반 + 김치냉장고장	1도어 냉장고장(냉장,냉동,김치)+측면장식장	990,000	99,000	891,000
80타입	중문	현관	미설치	LX하우시스 3연동 자동	2,970,000	297,000	2,673,000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펜트리	강마루 시공	포세린 타일	1,870,000	187,000	1,683,000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아트월	포세린 또는 폴리싱타일(600*1200)	세라믹 타일	2,970,000	297,000	2,673,000
	주방상부장+상판+벽특화	주방	주방벽체 - 타일, 주방상판 - MMA, 싱크볼 - 굴곡형(850), PET 도어마감, 일반 침니형 후드	주방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볼 - 각형볼, 아일랜드매입콘센트, 상부장 유리 도어마감 및 조명, 고급형 시크릿 후드	6,380,000	638,000	5,742,000
	주방 우물천정	주방 천정	식탁 매입등	우물천정+포인트판넬+천정 직부등	803,000	80,300	722,700
	거실 우물천정	거실 천정	우물천정+직부등	우물천정+라인등	638,000	63,800	574,200
84A타입	냉장고장+측면장식장	주방	일반 + 김치냉장고장	1도어 냉장고장(냉장,냉동,김치)+측면장식장	990,000	99,000	891,000
	중문	현관	미설치	LX하우시스 3연동 자동	2,970,000	297,000	2,673,000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펜트리	강마루 시공	포세린 타일	1,870,000	187,000	1,683,000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아트월	포세린 또는 폴리싱타일(600*1200)	세라믹 타일	3,960,000	396,000	3,564,000
	주방상부장+상판+벽특화	주방	주방벽체 - 타일, 주방상판 - MMA, 싱크볼 - 굴곡형(850), PET 도어마감, 일반 침니형 후드	주방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볼 - 각형볼, 아일랜드매입콘센트, 상부장 유리 도어마감 및 조명, 주방 장식장, 고급형 시크릿 후드	8,800,000	880,000	7,920,000
	주방 우물천정	주방 천정	식탁 매입등	우물천정+포인트판넬+천정 라인등	1,144,000	114,400	1,029,600
84B타입	거실 우물천정	거실 천정	우물천정+직부등	우물천정+라인등	638,000	63,800	574,200
	냉장고장+측면장	주방	일반 + 김치냉장고장	1도어 냉장고장(냉장,냉동,김치)+측면장	363,000	36,300	326,700
	중문	현관	미설치	LX하우시스 3연동 자동	2,970,000	297,000	2,673,000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펜트리	강마루 시공	포세린 타일	2,090,000	209,000	1,881,000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아트월	포세린 또는 폴리싱타일(600*1200)	세라믹 타일	3,960,000	396,000	3,564,000
	주방상부장+상판+벽특화	주방	주방벽체 - 타일, 주방상판 - MMA, 싱크볼 - 굴곡형(850), PET 도어마감, 일반 침니형 후드	주방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볼 - 각형볼, 아일랜드매입콘센트, 상부장 유리 도어마감 및 조명, 주방 장식장, 고급형 시크릿 후드	8,470,000	847,000	7,623,000
84C타입	주방 우물천정	주방 천정	식탁 매입등	우물천정+포인트판넬+천정 라인등	1,144,000	114,400	1,029,600
	거실 우물천정	거실 천정	우물천정+직부등	우물천정+라인등	638,000	63,800	574,200
	냉장고장+측면장	주방	일반 + 김치냉장고장	1도어 냉장고장(냉장,냉동,김치)+측면장	374,000	37,400	336,600
	중문	현관	미설치	LX하우시스 3연동 자동	2,970,000	297,000	2,673,000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펜트리	강마루 시공	포세린 타일	2,090,000	209,000	1,881,000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아트월	포세린 또는 폴리싱타일(600*1200)	세라믹 타일	3,960,000	396,000	3,564,000
84C타입	주방상부장+상판+벽특화	주방	주방벽체 - 타일, 주방상판 - MMA, 싱크볼 - 굴곡형(850), PET 도어마감, 일반 침니형 후드	주방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볼 - 각형볼, 아일랜드매입콘센트, 상부장 유리 도어마감 및 조명, 주방 장식장, 고급형 시크릿 후드	8,800,000	880,000	7,920,000
	주방 우물천정	주방 천정	식탁 매입등	우물천정+포인트판넬+천정 라인등	1,254,000	125,400	1,128,600
	거실 우물천정	거실 천정	우물천정+직부등	우물천정+라인등	638,000	63,800	574,200
	냉장고장+측면장+인출망 장	주방	일반 + 김치냉장고장	1도어 냉장고장(냉장,냉동,김치)+측면장+인출망장	1,430,000	143,000	1,287,000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 시 신발장 내.외부 형태 및 크기들이 변경되며 신발장 측면에는 가구마감을 위한 벽체가 시공됩니다.
- 바닥타일 옵션 미선택 시 침실과 같은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아트월 세라믹타일 미선택 시 600*1200각의 타일로 시공됩니다.
- 주방상부장+상판+벽특화 부분에서 84타입은 주방 장식장도 포함됩니다.(67,73,75,80타입은 장식장 미포함)
- 주방상판+벽특화 옵션 미선택 시 주방 벽체는 타일,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이며, 주방벽체에는 타일 시공에 따른 줄눈이 시공되며, 가구 디테일 및 규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벽특화 옵션 선택시 주방가구 특화 선택에 따라 시공위치가 상이하니 분양자료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장 특화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공간 및 일부 상부장만 제공되며 도어, 측면장, 툴장(84C해당)은 설치되지 않습니다.(개별가전 설치 시 가전 크기에 따라 가전이 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가전(냉장고) 선택을 하지 않아도 옵션 냉장고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 안		설치 장소	공급 금액	계약금(10%)	잔금(90%)
	선택	실내기 설치대수			계약시	입주지정일
67타입	선택1	2대	거실+침실1	3,718,000	371,800	3,346,2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5,155,000	515,500	4,639,5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33,000	643,300	5,789,700
73, 75, 80타입	선택1	2대	거실+침실1	3,967,000	396,700	3,570,3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5,246,000	524,600	4,721,4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724,000	672,400	6,051,600
84A, 84B, 84C타입	선택1	2대	거실+침실1	3,995,000	399,500	3,595,5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5,474,000	547,400	4,926,6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753,000	675,300	6,077,700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을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 위치는 옵션계약체결시 배포되는 옵션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 형태에 따라 실외기실, 후면 발코니 등에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유상옵션 공급주체에 귀속 됩니다.

전기/설비 시스템 (전타입)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위치	모델명	공급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멀티클리너	하츠	현관신발장	멀티클리너 EMC-350(하츠)	352,000	35,200	316,800
신발장살균기	하츠	현관신발장	신발장살균기 EGM-300(하츠)	264,000	26,400	237,600

- 시스템 유상옵션 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빌트인 가전 (전타입)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위치	모델명	공급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인덕션 쿡탑	SK매직	주방	3구 인덕션 쿡탑 IHR-BF30C	660,000	66,000	594,000
식기세척기	SK매직	주방	빌트인 도어패널 부착형 14인용-DWA90R5B	1,430,000	143,000	1,287,000
키친핏냉장고	LG전자	주방	1도어(냉장,냉동,김치)냉장고(LG오브제)	5,500,000	550,000	4,950,000

- 시스템 유상옵션 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옵션 선택 시 가구 및 가전의 도어 여닫이 방향은 좌우세대 및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의 색상은 홈페이지에 전시된 색상으로 될 예정이오니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해당위치에 하부장이 설치됩니다.
- 인덕션 쿡탑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및 가전 옵션 납부 방법 및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및 가전옵션 납부계좌	국민은행	304137-04-001336	양우건설(주)

- 상기 유상옵션 및 가전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사업주체 계약처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관련(유상옵션, 가전옵션)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명칭은 홈페이지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계약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시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홈페이지에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은 불가합니다.
 - 유상 옵션의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옵션제품인 현관중문은 제품의 성능개선, 신제품 출시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중문은 3연동 자동 슬라이딩 개폐 방식이므로 사용시 설치된 레일 주위에 이물질이 끼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5타입 제외 / 75타입의 경우 여닫이 도어 방식 적용)
 - 일상 생활 중 중문에 중량의 물건이나 사람이 기대어 압력이 가해질 경우 탈락 및 훼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강한 충격으로 유리가 파손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프레임 및 레일이 노출 시공됩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처(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 옵션의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유상 옵션 총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유상옵션 공급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 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공급주체의 귀책으로 추가 유상 옵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션, 가전옵션 등 부가계약 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 유의사항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공동주택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전 유상옵션(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에어컨, 기타 추가 선택품목)가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전에 사업부지(현장)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사업주체 계약처,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 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선큰, D/A,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변 도로 및 동해선 철도 거제역에 인접해 있어 근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남쪽 방향이 동해선 철도에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 일조/채광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시행자, 시공사, 인허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 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각종 CG(조감도, 투시도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코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선큰, 부정형파사드, 휴게공간,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원자재 수급 문제 및 전염병 발생,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인허가 변경, 지적확정 측량 및 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유상옵션의 품목 및 모델, 가격 등은 계약서 작성 전 입주자모집공고 및 옵션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쇄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해당 시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허가 증축이 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요청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지역의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합니다.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해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명칭**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건본주택에 관한 유의사항은 추후 건립될 경우에 한함)**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인테리어 소품가구, 전시용 가전제품, 연출용 조명 등) 등은 관람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들이니 사전에 확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건축인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청약접수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인허가도서에 준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건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상 부대시설 등은 인 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창호, 대피공간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벽지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 및 CG,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CG 이미지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추가선택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등 각종 인쇄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부정형파사드,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패턴,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 차 및 단지 레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 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설비기기 :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헤드, 점검구
 - 2)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콘센트, 월패드,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및 발코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본 시공 시 냉방전용(난방기능 없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 계약시 확인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설치하는 가전의 크기에 따라 가전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수납공간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

■ **설계고지사항 (단지 외부여건)**

- 청약 전에 사업부지(현장)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셔야 합니다.
- 건축인허가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익스테리어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동해선 철도와 도로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방음벽의 설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대지경계에 면한 인접대지 및 인접도로의 레벨에 따라 단지 외곽에 면하여 계획된 동의 일부 세대는 단지 외부 통행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와의 레벨 차이로 인해 대지경계선에 옹벽 설치 구간이 있으니, 사업주체에 문의하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반 레벨 극복을 위해 대지 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옹벽, 조정석 등)은 현장 여건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도로와 당 사업지 단지내 레벨차이에 따른 보행자 동선 계획(외부계단 등)은 차후 실 시공시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의 과거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축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1층 공공보행통로 및 휴게공간과 지하1층 선큰과 연결되는 외부통로(복도)는 24시간 외부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 후면 일부 구간에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이며 가림막이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설계고지사항 (단지 내부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 세대의 경우 빗물, 먼지 등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옥상 오염 및 조망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주동 형태에 따라 세대별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등), 축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 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및 색상,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 내용 중에서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근린생활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 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리플렛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당해 단지시설물의 변경과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입면(조경) 등은 입면(조경)특화 및 승인관청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단지 사인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본 아파트의 색채 및 입면은 사전에 임의로 제작된 것으로 외벽색채, 입면, 옥탑구조물은 디자인 자문 및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 도서, 분양시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단지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내부(발코니)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관련 세부 공간, 휴게시설, 포장 및 식재 계획 등은 위치 및 디자인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사업주체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인지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아(계단실)의 창호 형태와 설치위치는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분리수거장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실 시공시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 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분리수거장 등) 설치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접수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계획(건축허가(변경)도서 기준)된 단지 출입구외에 추가적인 출입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의 형태와 마감재 컬러 등은 건축인허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 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절기 지하주차장 습기 제거 및 배기가스 배출용 배기휀 가동 관리 불량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습기, 결로 발생 등 하자 및 사고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환풍, 재활용처리장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셔야 합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선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상가, 주차램프,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 배수, 제습장치, 냉/난방기 등)로 인한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해 있는 일부 세대는 지상, 옥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 의해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환풍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 급배기시설 (환기구 등) 및 D.A. (Dry Area) 위치, 크기, 개소,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상수 급수펌프, 소방 및 기타 배관 등 일부 장비가 근린생활시설과 공용으로 사용됨을 계약자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동관리비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유출수 배수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전기료 및 오수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시에는 공동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부대시설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일부 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장비,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안전 피난층에는 추가적으로 오배수, 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 제습기(지하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제어판별이 설치되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차량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차량조명, 소음, 진동 및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11개소 설치되며, 주차장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계고지사항 (단위세대 및 마감재 등)**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건축인허가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1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팜플렛에 표기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 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 (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에 따라 실외기루바(꺽러리)창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전열교환기는 필터류는 소모품으로 입주 후 교체에 대한 요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은 본 공사시 전열교환기,에어컨실외기,가스계량기,보일러등과 관련한 배관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설치공간이 협소 할 수 있고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는 전열교환기 급배기 배관 및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는 전열교환기 및 에어컨 실외기의 가동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침실1, 2, 3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및 변색의 우려가 있습니다.
- 석재류 시공 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및 사업주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 및 기타 출입문의 크기에 따른 가전, 가구 등의 출입, 설치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높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 두께 확보 및 품질 향상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옵션 및 선택형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하며, 홈페이지에 표기된 유/무상 여부의 기준은 기본확장형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적용 세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 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세대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의 사양 및 설치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디딤판, 주방상판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공사 시 홈페이지에 표기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 자재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욕실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구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사업주체의 실시설계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실시공사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마감재(저층부) 시공으로 인해 간섭되는 외부창호의 규격이 축소 될 수 있으니 청약 접수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인접세대는 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개별난방으로써 취사용 및 난방용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저압)될 예정이며 외부에 도시가스관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실외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건축인허가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창호 형태, 크기, 색상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아일랜드 포함)하부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하부, 세면대 주변 및 주방상판 하부에는 별도의 코킹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홈페이지 및 CG 등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 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천장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작동시 수동 작동되므로 작동 상태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소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당사 제공 옵션 포함, 생활 용품 구매등으로 입수한 제품 일체)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 보수, 통신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 (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표기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의 가구장 내부에는 법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바 이로 인해 가구 폭 및 일부 공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와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침실이 인접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다용도실,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 피난층 상부 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는 수용 신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최하층 2개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는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각 방을 온도조절 할 수 있는 MASTER기능은 거실 온도조절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세대 화장실 문턱 높이는 세대별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세대 겨울철 환기장치 사용상태 불량, 지연 및 환기관리 불량으로 인한 취약부위 결로발생 하자는 입주자의 관리 부제로 사업주체의 하자과 무관합니다.
-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이 설치된 벽의 전기 통신 배관라인(수직배관) 구간에 못질 또는 브라켓고정 등을 지양하고, 해당행위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가변형 벽체 변경시 전기배선기구의 위치가 실제 시공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내 하향식 피난구 개방시 해당층 및 직하층의 세대 월패드에 알림 및 경보가 작동됩니다.

■ **설계고지사항 (기타)**

- 홈페이지에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 할 예정이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홈페이지,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창호의 형태가 홈페이지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하부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되거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하여 있는 세대는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하여 발코니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선택 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 기준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 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염된 자재에 대해서만 교체 시공됩니다. (해당 세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비확장 발코니 및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희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 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샷시의 유리난간 설치 높이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색상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84A, 84B, 84C) 거실창에는 집광채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스템 제어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며, 홈넷 연동은 불가합니다.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일부부분에 집광채광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의 외부실외기가 지상1층 부분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의 제연설비로 인해 일부구간의 천정고가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 사항

- 초등학교는 남문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동래교육지원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 · 복리시설

부대 ·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분리수거장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7m	2.3/2.6/3.2m	2.7m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5-104-0000100호	₩85,797,67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 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66-9009)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1. 본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연산홀딩스 주식회사)와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4.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원리금등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5. 매수인(수분양자)은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인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
7. 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자(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 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① 매수자(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 ②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구조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마루	(주)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상성유비스(주)	상성유비스(주)	상성유비스(주)
금액	1,463,000,000	40,000,000	231,000,000	82,500,000	49,5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양우건설(주)	연산홀딩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10 (영등포동6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76, 제301동 제지하2층 제비208호(부암동,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110111-0618194	180111-1306603

■ 홈페이지 : 거제역 양우내안에 아시아드(www.거제역양우내안에아시아드.com)

■ 사업주체 계약처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76,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201동 208호

■ 분양문의 : 1600-595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